

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제출기한이 만료됩니다.

제출 전 확인해보세요!

석면조사 실시 기한 : 2019년 5월 22일 ~ 2020년 12월 31일
제출기한 :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후 1개월 이내

*정확한 석면조사대상 여부는 관할 시·군·구청 담당과 (예 : 환경정책과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코로나19 확산으로
유예기간이 기존
5월 21일까지에서
12월 31일까지로 연장
되었습니다.

1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12월31일 이전인가요? ☒

➡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.

2 어린이집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가요? ☒

➡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은 2012년 이후부터 이미 석면조사의무 대상입니다.
2019년 5월 22일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도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
3 2019년 5월 22일 당시 사용중인(휴원포함) 어린이집인가요? ☒

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인 건축물에
2019년 5월 22일 이후 새롭게 설립된 어린이집은?

➡ 「건축법」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, 실시한 후 1개월 이내 석면조사결과를 관할 시·군·구청 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 건축물석면조사 실시일이 2019년 5월 22일 이후 인가요? ☒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실시한 경우는 새로이 석면조사를 받은 후
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사전 석면조사 인정 신청은 2019년 11월 28일 종료되었습니다.

❖ 건축물석면조사는 어떻게 받나요?



- ➡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.
석면조사기관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moel.go.kr>)

⇨ 정보공개 ➡ 사전정보 공표목록 ➡ '석면조사기관'검색

② 석면관리종합정보망(<http://asbestos.me.go.kr>)

⇨고객마당 ➡ 자료실 ➡ '석면조사기관'검색

❖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
관할 시·군·구청 담당과(예.환경정책과)에 문의하여
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 할수 있습니다.

[온라인 제출방법]



- ➡ 1단계) 석면관리종합정보망(<http://asbestos.me.go.kr>)에
석면조사 결과서류 등록

① 회원가입 : 법적 건축물소유자 명의 가입가능, 소유자명이 확인 가능한
서류 필요 (예 : 건축물대장)

② 정보입력 후 석면조사 결과서를 등록하면 식별번호(18자리)가 부여됩니다!

- ➡ 2단계) 민원접수 - 정부24(www.gov.kr)

① 건축물 소유자의 공인인증서 준비

②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'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' 검색 ⇨ 신청

③ 정보입력 (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시 부여된 식별번호 필요)

*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「건축법」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시까지
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
❖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했는지 잘모르시겠나요?



- ➡ 관할 시·군·구청 담당과(예.환경정책과)에 문의하시거나
석면관리종합정보망 (<http://asbestos.me.go.kr>)
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.

- ➡ 석면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
본인이 아닌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.

※ 시스템 관련문의(1661-4072)

※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천만원 이하,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하지
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